

자율과 창의로 꿈을 키우는

학 교 규 칙



신 하 초 등 학 교

467-865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250번길 12

교장실 636-6756 행정실 636-6755
교무실 636-6750 F A X 637-6755

<http://shinha.es.kr>

신하초등학교규칙

제정	1999.	4.	1
제1차 개정	2005.	5.	17
제2차 개정	2007.	7.	19
제3차 개정	2011.	10.	20
제4차 개정	2015.	6.	1
제5차 개정	2016.	4.	1
제6차 개정	2018.	7.	9
제7차 개정	2022.	12.	16
제8차 개정	2023.	12.	13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신하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 ②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 【교육목표】 신하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자율과 창의로 꿈을 키우는 어린이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 【명칭】 본교는 신하초등학교라 칭한다.

제5조 【위치】 본교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250번길 12에 둔다.

제 3장 수업연한 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6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 【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사계절 방학
 - 3. 학년말 방학
 - 4. 학교장재량휴업일
- ② 제1항 제2~4호 및 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2~4호의 방학 기간은 제14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 ④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 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 【학급수 및 학생정원】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 정원은 당해 연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 5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

제11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2조 【수업 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방송 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할 경우에는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외 체험학습을 연간 2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따라 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장허가체험학습 관련서류(신청서와 보고서 등)는 당해 학년 보관 후 진급과 함께 폐기한다.
 - 가. 학교장허가체험학습은 가족 여행, 경조사 참석,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각종 체험 활동 등의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나. 체험 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하며 안전상의 책임은 보호자가 지도록 한다.
- ⑤ 학생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보호자가 다른 학교와의 교환·교류학습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허가 교

환교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장은 허가 전 위탁 희망학교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허가여부를 통보하며 해당 학년 범위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 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 ③ 재취학·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학생평가】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5조 【수료 및 졸업】

-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6장 입학·전학·재취학·편입학·취학의무의 면제·유예·정원외 관리 및 유급

제16조 【입학자격】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은 본교의 1학년 입학 대상으로 한다.

-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 아동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본교 통학구역 관할 읍·면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의 1항에 해당하는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외국인인 아동,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 ③ ②항의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출입국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본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절차에 갈을 수 있다.

제17조 【입학시기 및 조기입학】

- ① 입학·재취학·편입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

- ② 조기입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의 보호자가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을 신청해야 한다.

제18조 【전·편입학, 재취학】

- ① 전 · 입학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는 경우 학교장은 수시로 이를 허가한다.
- ② 학생이 주소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할 경우 담임교사는 전학절차를 안내하고, 전학한 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련된 서류를 요청할 경우, 학생의 학교 생활 기록부 전산 자료,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각종 보조부 원본과 건강 기록부를 빠른 시간 안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 ④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 · 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장이 발행한 출 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 신고 증을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 · 입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이 입학 또는 편입(재취학)을 할 경우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⑦ 학생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및 인권 존중 차원에서 무호적자·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학구 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등)만으로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 ①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취학예정자로 통보 받은 아동이 취학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며 가정방문 및 보호자 면담 요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면담에 불응하거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는 아래와 같으며,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의무교

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 취학 의무의 유예 및 면제가 가능한 사유 : 인정유학(대상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 및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④ ③항에 대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⑤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⑥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입학 전 취학의무의 유예)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
- ⑦ 유예 및 면제 시기는 입학할 학생은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까지로 하고 재학생은 장기간 수업 결손 사유 발생 시의 학기 중에 한다.
- ⑧ 학교장은 ③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읍·면장 및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으로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제19조의 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 ① 취학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의 결정에 관한 심의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③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 특수학급교사 1인을 추가한다.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3. 교감, 교무부장, 생활부장 및 학년부장 등을 내부 위원으로 한다.
 4. 외부위원은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한다.

제20조 【출석 독촉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 ①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 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 · 재취학 · 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 · 재취학 · 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초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결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21조 【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 ①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이 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 【정원외 관리 및 유급 기준】

당해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시 정원외 관리 및 유급 기준이 적용된다.

제 7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명예졸업

제23조 【조기진급·조기졸업】

-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의 단축은 1회(1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 ③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결정한다.
- ④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4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신청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가 하며 학년 초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로 한다.
-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을 가지고 담임교사가 자료를 수집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 제출
 2.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대상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선정(회의록 보관)
 3. 선정된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함

제25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

-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학습방법은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사들의 지도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되며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④ 조기진급 대상자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진급 대상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 ⑥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 ⑦ 조기진급자가 조기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사항이나 동의를 받아 조기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6조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 ① 제26조 ②항의 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⑦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7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 2. 위원회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함
- ②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④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 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⑥ 위원이 제④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

(回避)하여야 한다.

⑦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기준의 결정
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6.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28조 【명예졸업】 명예졸업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다.(명예졸업 업무처리 절차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제29조 【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처리】

- ①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 8장 수익자부담경비의 비용 징수

제30조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우유급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 9장 학생 생활

제31조 【학생생활인권규정】

-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2조 【학생 포상】

-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② 포상의 종류·대상과 방법·시기 등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 【학생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 반드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프로그램 여건상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 ④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제34조 【학생의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제35조 【학생 자치 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어린이회 및 학급어린이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어린이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운영한다.

제36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장 학업중단 예방

제37조 (학업중단 숙려제)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 11장 학교 규칙 개정 절차

제38조 【학교 규칙 개정 절차】

- ① 학칙은 학교의 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② 제1항의 학칙 개정은 학교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 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학칙 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기타 학칙 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 【시행규칙】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2005년 5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7년 7월 19일)
- ②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교의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③ 【경과조치】

2011년 3월 28일 교무회의에서 시안을 작성하고, 2011년 10월 20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함.

부 칙

- ① 【시행일】 본교의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③ 【경과조치】

2015년 4월 28일 교무회의에서 시안을 작성함.

부 칙

- ① 【시행일】 본교의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경과조치】

2016년 3월 8일 교무회의에서 시안을 작성함.

2016년 4월 1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함.

부 칙

① 【시행일】 본교의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의 4항은 1학기 시작일로 소급 적용한다.

②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경과조치】

2018년 6월 18일 규정제·개정위원회에서 시안을 작성함.

2018년 7월 9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함.

부 칙

① 【시행일】 본교의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경과조치】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과-30086(2022.11.1.)호에 의거하여 시안을 작성함.

2022년 12월 16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함.

부 칙

① 【시행일】 본교의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경과조치】

2023년 12월 4일 규정제·개정위원회에서 시안을 작성함.

2023년 12월 13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함.

신하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2002년 9월 1일 제정)
(2003년 5월 1일 1차 개정)
(2008년 3월 26일 2차 개정)
(2010년 12월 6일 3차 개정)
(2011년 4월 8일 4차 개정)
(2011년 6월 7일 5차 개정)
(2012년 6월 12일 6차 개정)
(2015년 2월 11일 7차 개정)
(2015년 7월 9일 8차 개정)
(2016년 10월 4일 9차 개정)
(2018년 7월 9일 10차 개정)
(2019년 10월 21일 11차 개정)
(2021년 6월 28일 12차 개정)
(2023년 12월 13일 13차 개정)
(2024년 4월 4일 14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신하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학생생활교육을 통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 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 1항, 제 7, 8, 9호의 학교규칙, 제 31조의 학생 징계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

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 【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6조 【학생의 권리】

1.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를 가진다.
2.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와 동시에 사회 생활규범을 익혀 바르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4. 학교구성원은 제3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5. 학교의 장은 제3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6.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7.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7조 【학생의 책임】

1.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2.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3.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4. 학생은 일체의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한다.
5.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가할 책임이 있다.

제 2 장 학생생활

제 1 절 교내생활

제8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아니 하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1조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2조 【양성평등】 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킨다.

1. 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2.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이나 교감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 【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사이버 따돌림 등 일체의 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외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담임교사나 교감, 교장에게 즉시 알리고 교장의 명에 따른다.

제14조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클럽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특별활동부와 생활지도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교장의 허가를 받은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3. 교장의 허가를 받은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5조 【여가활동】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6조 【학급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4. 자신의 취미 활동 및 공동체 활동을 권장하며 건전하지 못한 사행 놀이(도박, 물품거래, 돈 거래, 사이버머니 거래)는 금한다.

제17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생활지도부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8조 【표현의 자유】 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다른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표현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별도 지정 운영하여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 2 절 복장

제19조 【외모】 신체 위생 상태 및 복장 세탁 상태를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하며 외모를 단정히 한다.

제20조 【복장】 학생은 자유 복장을 하되 여름, 봄과 가을, 겨울을 고려한 옷을 권장한다.

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복장을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6. 실내화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앞뒤가 막힌 형태의 실내화를 착용한다.
7. 색조 화장은 피부보호 목적 외에는 학생의 건강을 위해 하지 않도록 한다.

제 3 절 출결사항

제21조 【목적】 학생의 출·결석 상황을 파악하여 균면성, 안전지도, 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재적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하며 세부 사항은 신하초등학교 교칙에 따른다.

제22조 【등・하교시간】 등교시각은 09시 00분까지로 하며, 하교시각은 청소활동을 포함한 학급담임의 학급 교육과정 활동 종료 시각으로 한다.

제23조 【지각・조퇴】 지각은 1교시 시작 후 등교하는 것을 말하고, 조퇴는 청소활동을 제외한 교과 및 특별활동, 학교재량 시간 활동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으로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제24조 【학교 대표 및 경연대회 참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및 훈련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25조 【학업중단 숙려 제도】 학업중단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7주(49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다.

제 4 절 교외생활

제26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거나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활동한다.
3.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등 법에 저촉되거나 정신·신체적 안전에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제27조 【여행】 학생이 국외를 여행(연휴 및 방학 기간)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나 담임교사에게 사전에 알린다.

제28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4. 학생이 소지한 물품에 대한 지도
5. 휴대전화 및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지도

제 5 절 정보통신

제29조 【사이버 생활】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학습 과제 또는 스스로 하는 학습을 한 후에 이용한다.
9.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지 않는다.
10.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제30조 【통신기기(휴대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 소지 여부 : 학생의 휴대폰 교내소지는 허용하되 등교 후 휴대폰 전원을 끄고 본인이 보관한다.
2. 사용시간 및 장소 관련 규정
 - 가. 사용 가능한 시간 : 원칙적으로 교내에서 학생의 휴대폰 사용은 금하되 학생의 특별한 사유로 사용해야 할 시에만 교사의 허가를 받고 사용한다.
 - 나. 사용 장소 : 복도, 건물 밖(그 외의 장소는 불가) 등의 정해진 장소에서 사용한다.
 - 다. 규정을 어길 시 제 71조 훈육의 [물품관리 보관 규정]에 따른다.

제 6 절 학생자치활동

제31조 【학생자치활동】

1.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둔다.
2. 학교장은 학생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하며 세부 사항은 학생자치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3.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 내 학급회의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자치회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7. 학생대표 입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가. 입후보 학생은 본교 재학생이어야 한다.
 - 나. 학생생활규정 위반이나 학교폭력으로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이 없어야 한다.
8. 학생대표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 가. 학생생활규정 위반이나 학교폭력으로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 중에 있는 학생
 - 나.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제 3 장 학생생활지도

제 1 절 생활지도

제33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 점검을 먼저 하고, 안전에 유의해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감전·공사장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조·종례 시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녹색어머니회, 실버폴리스, 어머니폴리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참고해 진로지도를 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교과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연 10시간 이상 확보)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35조 【교외생활 지도】

1.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교내 및 학교주변 위험취약지구를 순회지도하여 학생폭력 및 비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교사는 학생의 교외 생활 지도를 위해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제36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의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 2 절 시상

제37조 【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할 수 있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학력부문 - 수학·과학 경시대회 등
2. 예체능부문 -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3. 모범·근면부문 - 기본이 바로 선 어린이상, 공로상 등
4. 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38조 【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한다.

제39조 【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제40조 【시상기준】

1. 학력부문 : 교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경시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2. 예체능부문
 - 가.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 나.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 기능상 :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3. 모범·근면부문

가.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봉사공로상, 예체능공로상, 특별공로상)

나. 인성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라. 기타 :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4. 특별상 : 교내·외 행사가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 4 장 징계

제41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1. 학생들의 생활지도, 징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두며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 및 회복적 생활지도를 위해 운영하되 세부사항은 본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교무부장, 생활지도 담당 부장, 6학년 부장, 5학년 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생활지도 담당 부장으로 한다.
3. 선도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4. 선도는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선도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하고, 선도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 선도 공고 시에는 인적 사항을 비공개로 한다.

제42조 【기능】

1. 학생들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학생들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3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학생으로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에 따른 엄한 처벌보다는 차후 유사한 사안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측면을 판단하여 시행한다.
4.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준다.

제44조 【심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5조 【재심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학생·학부모 또는 교사가 불복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학교장이 이를 검토하여 상당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경우 재심의에 부친다. 재심의가 결정되면 7일 이내 재심의를 해야 한다.

1. 재심의 요구 또는 신청
2. 재심의 여부 결정
3. 재심의
4. 학교장 조치

제46조 【종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 반드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프로그램 여건상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47조 【방법】

1.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2. 사회봉사는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되, 학부모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3.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한다.
4. 출석정지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5.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48조 【내용】

1. 학교 내의 봉사 - 하루 2시간 이내, 5일 이내
 - 가. 교내의 환경 정화활동(쓰레기 줍기 및 복도 계단청소)
 - 나.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 다. 교재·교구 정비
2. 사회 봉사 - 하루 5시간 이내, 5일 이내
 - 가. 지역 사회 봉사활동
 - 나. 복지시설 일손 돋기
3. 특별교육 이수 - 하루 5시간 이내, 5일 이내
 - 가.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과정 이수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학교폭력,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 등의 교육 이수
 -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Wee클래스,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 라.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마. Wee클래스 등 본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마련
 - 바.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사.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한다.
 - 아.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가.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기회를 제공
 - 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해 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음
 - 다.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 제공

제49조 【기준】

1. 학교 내의 봉사
 - 가. 학교를 무단이탈한 자
 - 나. 수업 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자
 - 다. 학교의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자
 - 라.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2. 사회봉사

- 가. 흡연·음주한 자
- 나. 도박을 한 자
- 다. 외설물(음화, 불량서적 등), 담배, 술 등 소지자
- 라.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3. 특별교육

- 가.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장기 결석시
- 나. 환각제·본드·대마초 등 약물을 오·남용한 자
- 다. 학교 질서를 문란 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의 모임을 피한 자
- 라. 교권을 모독한 자
- 마.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자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 가.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 징계를 받았으나 불이행시 1주일 출석 정지

제50조 【심의 확정】 선도처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1조 【통보】 선도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처분 내용을 서면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52조 【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선도처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선도처분 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3조 【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반성의 정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선도처분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 5 장 징계 외의 기타지도 방법

제54조 【방법】

1. 학생지도 시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 한다.
2. 훈계 지도 방법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배부한 체벌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3.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 6 장 상담실 및 장애학생의 보호

제55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

상담교사를 둔다.

제56조 【장애학생의 보호】

1.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폭력이나 인권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이루어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 7 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7조 【구성】 위원회는 8인서 ~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인권을 정하고, 학생 · 교원 · 학부모 · 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1.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2.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3.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58조 【구성방법】

1.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4.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2.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예를 들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장 학교생활인권 규정 개정 절차 및 정보공시

제60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신하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 7장에 의거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1조 【개정안 발의】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가.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 다.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라.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2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3조 【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4조 【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통신문(SMS 포함)을 발송한다.

제65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6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 9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규정

제 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 67 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 68 조 【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69 조 【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0 조 【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 71 조 【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 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단위학교 재량 결정)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① 수업 중 학생 간 불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교사가 담당교원에게 학생에게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内外)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p style="text-align: right;">* 지각의 기준 : 9시 10분</p> <p style="text-align: right;">※ 별도의 내부계획을 통해 지정장소 및 학생지도 담당 교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p>			

-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혹은 최근 한달 내에 반복적으로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⑪ 학생은 수업 및 일과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및 쉬는시간에 교육 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70조 제3항에 따라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를 한차례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상담 혹은 성찰글쓰기를 한 뒤 되돌려 줄 수 있다.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흡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⑯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문자예시>

000학생이 0월0일 주의를 주었음에도 휴대폰을 사용하여 학생물품 분리 보관 규정에 따라 분리보관 후 반환하였습니다. 가정에서도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조항을 인지시켜 주시고 함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⑯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 72 조 【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당일 제출 원칙)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배상 및 청소)
 - 실내화를 신고 운동장 및 야외에 출입하거나 신발을 신고 학교에 오는 경우 해당 구역 청소
 - 학교 시설 및 물품 손괴 시 원상복구 및 배상

제 73 조 【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74 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75 조 【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76 조 【기타 사항】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제정
2. (1차 개정) 2003년 4월 31일
3. (2차 개정) 2008년 3월 26일
4. (3차 개정) 2010년 12월 6일
5. (4차 개정) 2011년 3월 28일 교무회의에서 시안을 작성하고, 2011년 4월 8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6. (5차 개정) 2011년 5월 26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2011년 6월 7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7. (6차 개정) 2012년 6월 12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2012년 6월 12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8. (7차 개정) 2015년 2월 3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2015년 2월 11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9. (8차 개정) 2015년 7월 9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10. (9차 개정) 2016년 10월 4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11. (10차 개정) 2018년 7월 9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12. (11차 개정) 2019년 10월 21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13. (12차 개정) 2021년 7월 15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14. (13차 개정) 2023년 12월 4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2023년 12월 13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15. (14차 개정) 2024년 4월 4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